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6. 10.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왕은선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제안경과

- 본 기금안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변경사유)

- 인구정책 지원기금
 -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부족재원 반영
 - 청년 이사비 및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수요 조정
-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확대에 따른 홍보·운영비 증액
 - 목표 모금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 비용 증액
- 신청사건립기금
 - 신청사 건립재원 조성을 위한 전입금 증액
 - 전입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정

3.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 (D=B-C)	
계	112,313,589	29,355,111	3,090,910	26,264,201	138,577,790
인구정책 지원기금	6,355,432	597,338	2,961,896	△2,364,558	3,990,874
고향사랑기금	288,805	385,712	129,014	256,698	545,503
신청사건립기금	105,669,352	28,372,061	0	28,372,061	134,041,413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변경 등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
- 인구정책 지원기금은 출산축하금과 산후조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홍보·운영비와 답례품 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모금액 증가에 따라 홍보비와 답례품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모금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신청사건립기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18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을 연계하여 기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본 변경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조정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재원을 추가로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